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타 시스템 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규정 보완 등 제도와 시스템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21조의2)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2026년 3월 11일 이후 신고·고발한 경우부터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과 제재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의 최대 30퍼센트’로 확대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자가 제재부가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산금의 30퍼센트까지 포상금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 보완(안 제22조)

고유식별정보 처리 주체를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규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로 규정함.

다.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안 별표 1)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사망자 정보 범위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사망진단 관련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사망진단 관련 정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안장 또는 합장을 신청한 대상자의 사망관련 정보를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2026. 9. 21. ~ 10. 2.)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9. 21. ~ 11.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규제 비대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제1항”을 “법 제31조제1항”으로, “후에”를 “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를 말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령한 금액과 제재부가금(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이유로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한 경우에는 그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하기 전의 제재부가금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제21조의2제4항제1호 중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을 “반환을 명령한 금액과 제재부가금을 합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이후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산금의 30퍼센트(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포상금을 감액 지급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에 적용된 비율과 동일한 비율을 말한다)를 포상금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별표 1 제39호부터 제47호까지를 각각 제42호부터 제50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39호부터 제4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사망진단 관련 정보

4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사망진단 관련 정보

4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또는 합장을 신청한 대상자의 사망관련 정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1일 이후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생략)	제2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u>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u> 해야 한다.	② ----- <u>법 제31조제1항</u> ----- ----- ----- ----- <u>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를 말한다)에</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u>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u>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령한 금액과 제재부가금(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이유로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한 경우에는 그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하기 전의 제재부가금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u> ---.
1. 당초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	1. -----

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
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범
위에서 지급할 것

2. (생략)

<신설>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
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

반환을 명령한 금액과 제재부
가금을 합산한 -----

2.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에 따른 통보 이후 법 제35조제
4항에 따른 가산금이 확정된 경
우에는 그 가산금의 30퍼센트
(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포상금
을 감액 지급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에 적
용된 비율과 동일한 비율을 말
한다)를 포상금으로 추가 지급
할 수 있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 제6항-----

-----.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
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 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8. (생략)	----- ----- ----- ----- -----. 1. ~ 8.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연 락 처	(044) 205 - 3735